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9
------------	-----

2024. 10. 2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10. / 이진환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4. 10.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0.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 신설 및 관련 규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표창 수여 대상 부문의 명확화(안 제5조)
- 시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취소 규정 신설(안 제14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선기)

- 본 안건은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여 대상의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의회 의장 포상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별도의 규칙 제정을 명시하여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